

(1 / 1)

납세증명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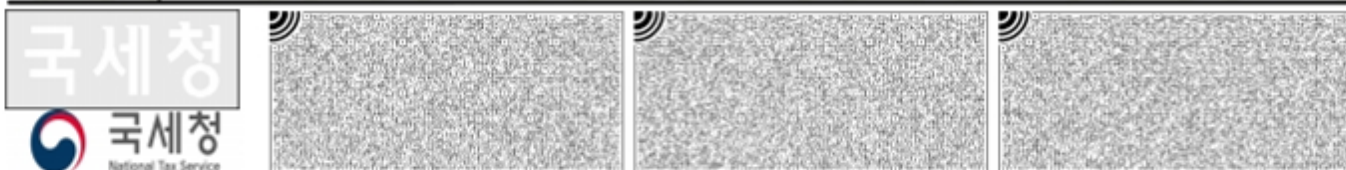
발급번호		처리기간 즉시(단, 해외이주용 10일)					
납세자 인적사항	상호(법인명)		사업자등록번호				
	성명(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				
	주소(본점)						
증명서의 사용목적	☒ 대금수령 ☐ 해외이주 (이주번호 제 호, 이주확인일 년 월 일) ☐ 기 타						
증명서의 유효기간	유효기간	2021 년 3 월 18 일					
	유효기간을 정한 사유	☒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7조1항 ☐ 기 타 (사유:)					
징수유예 또는 채납처분 유예의 내역 (단위 : 원)	유예종류	유 예 기 간	과세기간	세 목	납부기한	세 액	가 산 금
		해	당	없	음		
물적납세의무 채납내역 (단위 : 원)	위탁자	과세기간	세 목	납부기한	세 액	가 산 금	
	해	당	없	음			

「국세징수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, 채납처분유예액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채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.

접수번호	
담당부서	
담당자	
연락처	

2021 년 2 월 16 일

세무서장



* 본 증명서의 위·변조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「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홈택스 > 민원증명(증명발급) > 민원증명 원본확인」에서 발급번호로 확인, 또는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 (공문서를 위·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)

* 본 증명서는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대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입니다.